

조례안 예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2 - 76호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창원시의회 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동물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보강하고, 동물복지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동물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에 관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동물과 시민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보강함(안 제2조)
- 나.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보강함(안 제2조의2)
- 다.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라.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3)
- 마.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 바. 협력체계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6조 및 제27조)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6
----------	-----

발의연월일 : 2022. 11. 17.

발 의 자 : 전홍표·권성현·김경수·김경희·김묘정·김상현
김영록·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해정·백승규
서명일·심영석·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종화
정길상·장순우·진형익·최은하·한상석·한은정
홍용채·황점복 의원(26명)

1. 제안이유

- 동물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보강하고, 동물복지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동물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에 관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동물과 시민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보강함(안 제2조)
- 나.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보강함(안 제2조의2)
- 다.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라.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3)
- 마.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 바. 협력체계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6조 및 제27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다. 혈행조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생명존중의식”을 “동물 생명존중의식”으로 한다.

제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을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

3.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

6. 동물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제3조의2, 제6조의3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민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법 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3(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 ①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자원봉사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봉사일 3일 전까지 자원봉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원봉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동물에게 전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단체인원이 1일 10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자원봉사의 효율성이 없거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의2(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은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제6항 중 “시행 할”을 “시행할”로 한다.

제26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

동물 보호와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과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 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u>생명존중의식</u>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u>동물 생명존중의식</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 을 준수해야 한다. 1. (생 략)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제2조의2(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 -----. 1. (현행과 같음) 2. 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

것

<신 설>

3. (생 략)

4. 동물이 고통 ·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생 략)

<신 설>

<신 설>

병 ·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아니 하도록 노력할 것

3.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 ·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

4. (현행 제3호와 같음)

<삭 제>

5. (현행과 같음)

6. 동물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제3조의2(시민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법 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3(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

①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자원봉사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봉사일 3일 전까지 자원봉사 신청
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안전하
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원봉사를 제
한할 수 있다.

1. 보호동물에게 전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단체인원이 1일 10명 이상인 경
우

3. 그 밖에 자원봉사의 효율성이
없거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10조의2(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
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
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대
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
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하
며, 등록한 내용은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응급동
물병원 지정 운영) ① ~ ⑤ (생
략)

⑥ 동물병원 지정·운영 등에 대
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

제24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응급동
물병원 지정 운영) ① ~ ⑤ (현행
과 같음)

⑥ -----

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 (생 략)

----- 시행
할 -----.

제2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
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
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
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27조(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하여 현
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동물” 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파충류 · 양서류 · 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3. “반려동물” 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 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 · 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 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3의2. “맹견” 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4. “동물실험” 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5. “동물실험시행기관” 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 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 ·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제7조(적절한 사육·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

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9. 8. 27.>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

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3. 2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⑤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 · 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⑦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 ·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⑧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⑨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⑩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9. 3. 12.>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 ·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② 제1항의 경우 세부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과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3. 31. >

1. “동물” 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4. “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여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반려동물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제공과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동물보호센터”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한 동물로서 영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9. “동물등록대행자”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지정한 자를 말한다.

10. “맹견” 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시행 규칙 제1조의3에서 정하는 개를 말한다.
11. “길고양이” 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12. “반려견 놀이터” 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13. “동물병원” 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2조의2(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22. 3. 31.]

제3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매년 추진해야 하며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의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도 단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반영해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 실태 자료수집 등) ① 시장은 동물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실태 및 통계 등을 수집·조사·분석해야 한다.<개정 2022. 3.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및 통계 등의 수집·조사·분석을 위하여 전문 연구 기관에 위탁·용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3. 31.>>

제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운영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 3. 31.>>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구조·진료·공고·보호·관리·반환·분양업무
2. 법 제22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업무
3.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제6조의2(동물보호센터 노동자 처우개선 등) ① 시장은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동물보호센터 공무직의 위험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노동자 채용조건에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소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31.]

제7조(보호동물의 공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17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8조(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에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해야 한다.

1. 학사 이상의 동물 관련 전공자
2. 동물의 사육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축산부서 소속 공무원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유기동물 반환 및 분양)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그 동물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기동물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반환요구기간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유기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또는 영 제5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유기동물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기동물 분양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한 동물의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 3. 31.>

제10조(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등에 유기동물 보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은 자에게 해당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소요경비를 청구할 때에는 소요경비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는 「창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소요경비 산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1조(동물등록대행자 지정·관리)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1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판독기 등을 갖추고 등록 대행 업무를 신청한 자 중에서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물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 3. 등록신청을 받고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③ 동물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 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직권으로 지정을 해지한다.
- ④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별도의 조치 없이 직권으로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해 적용할 수 없고,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 3. 31. >

-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 2. 유기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 3.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재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 6. 중성화 수술이 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30퍼센트
-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20퍼센트 (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제13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 시 반려견 놀이터

제14조(반려·유기동물 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반려·유기동물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복지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반려·유기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 반려·유기동물 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물보호 업무 소관 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1명 이상)
- 동물보호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1명 이상)
- 법 제4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촉받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1명 이상)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

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소관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22. 3. 31.>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4. 29.>

제20조(동물보호업무 등의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복지 및 구조·보호

· 분양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길고양이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3. 31.>

②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에는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중성화 수술, 치료목적의 구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길고양이 포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불법적인 포획과 도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신설 2022. 3. 31.>

④ 시장은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신설 2022. 3. 31.>

1. 다치거나 3개월 미만의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⑤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

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 3. 31.>

⑥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후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관리해야 한다.<신설 2022. 3. 31.>

⑦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이주방사 계획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3. 31.>

⑧ 시장은 길고양이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활동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소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2. 3. 31.>

제22조(반려동물 보호 사업 등)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3. 31.>

1. 반려동물 학대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지도강화 사항
2. 어린이, 학생 및 시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반려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 사항
3. 동물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학대방지 현수막 게첨 사항
4.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추진 사항

[제목개정 2022. 3. 31.]

제23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시장은 반려견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완화 및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3. 31.>

제24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응급동물병원 지정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시에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시에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피학대동물 보호조치 및 유기동물의 응급진료를 위한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피학대동물은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 하도록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병원 등을 지정·운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동물병원 지정 ·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31.]

제25조(반려동물 교육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하 “반려동물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의 관리 ·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시민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31.]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